##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7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이기헌・박민규・박지원

윤건영 · 박수현 · 박 정

민형배 • 박희승 • 이병진

장철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, 비효율적 안내 체계, 안전성 부족,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	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		
의 수립 등) ①・② (생 략)	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		
	유)		
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③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6.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		
	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		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